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11

발의연월일 : 2020. 10. 14.

발 의 자 : 남인순 · 신정훈 · 오영환

이수진비・이용빈・김성주

윤영덕 · 홍석준 · 윤재갑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017년 12월 관련 내용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이미 받은 대학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2020년 8월에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인정 대학등이 불과 4개월 남은 기한 내에 인증을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임. 또한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인 2018년 이후에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2019·2020년 신입생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대학이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졸업을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됨.

한편, 고등교육기관 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등은 해당 교육과정

의 운영을 개시한 후부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인과 달리 정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신설이 용이한데, 교육과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대학등이 인증을 신청하기도 전에 입학하므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이에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및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법률 제 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를 하시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그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인정기관의 인증을 신청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법 시행 후"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이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4조(면허) ① (생 략) 제4조(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 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 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 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 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 갖춘 것으로 본다. 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 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 설>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 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 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 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 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 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 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 설> 2.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 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학등은 제4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 과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 기 전에 그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인정기관의 인증 을 신청한 그 대학등에서 보 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 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② 이 법 시행 이후 인정기관

<신 설>

이 지정되기 전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 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 여 졸업한 사람은 보건의료정 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